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8 선고 2023가단1110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엄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변 론 종 결 2023. 10. 6.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29. 3,000,000원, 2019. 5. 13. 5,000,000원, 2019. 6. 6. 5,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과

원고는 D과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1. 7. 8. ‘원고는 C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C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C이 그 돈을 D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계 163,000,000원을 D에게 대여하였다. D은 2018. 11.경 원고에 대한 일부 변제금 28,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나 C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C은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6.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7. 8. 선고 2021가합100297 판결). C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5596 판결), 2022. 7. 22.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

C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9. 4. 29. 3,000,000원, 2019. 5. 13.과 2019. 6. 6. 각 5,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C에 대한 형사소송의 경과

C은 D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반환 명목으로 28,300,000원을 받아 원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13,000,000원을 아들인 피고의 이사비용 및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16,40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3. 16. 선고 2021고단1151 판결). C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피해액 16,407,000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778 판결) 2022. 12. 30.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된 2022. 3. 16. 이전에 수사기록 및 고소인 진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대해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부산지방법원에 관련 형사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2022. 5. 18. 원고에게 송부촉탁문서 도착 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확인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형사소송 기록을 송부 받아 확인한 시점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알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 외에는 원고가 그 이전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은 2019. 4. 29.부터 2019. 6. 6. 사이에 아들인 피고에게 합계 13,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27158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C이 원고의 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이사비용 및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임이 관련 형사소송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지급된 위 금원은 원고의 재산을 C이 횡령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킨 것에 불과하여 C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C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규